

특별조사기일, 희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안내

폐사의 희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및 장소가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생담보권자, 희생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희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계인집회 기일 : 2021. 4. 9.(금) 오후 3시
 2. 관계인집회 장소 : 서울희생법원 제1호 법정
 3. 관계인집회 목적 : 특별조사기일 및 희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4. 관계인집회 참석시 유의사항
 - 가. 본인출석시 : 신분증 지참(법인 대표이사 출석시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요망)
 - 나. 대리인이 출석시 :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채권신고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 본인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다. 희생계획안에 동의하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당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별첨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당사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9(논현동,팍스타워) (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 라. 관계인집회 당일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회 30분 전에 법정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법정 출입을 위해서 출석확인 절차가 불가피하니, 집회가 이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능한한 일찍 도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 희생계획안 등에 대해 궁금하신 것은 당사 전담반(☎02-538-6856 ☎070-7732-6142 ☎070-4278-6181 ☎070-4278-6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인집회 원활화를 위한 폐사의 특별 요청사항 : 집회를 개최하는 법정이 2만7천명이 넘는 희생채권자를 수용할 수가 없고 본인 출석시 출석현황표 작성 및 의결권 집계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집회를 할 수 없사오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첨 위임장을 폐사에 제출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위 임 장

(회생회사 직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사 건 : 2020회합100063 회생

채 무 자 :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 리 인 : 성 낙 민

수 임 자 : 이 승 호

(위임받는 사람)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51번길 11 104동 804호)

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그 속행기일에서의 출석, 의견진술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1. . .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서울회생법원

제 2 부

통 지 서

수 신 수신처 참조
사 건 2020회합100063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9(논현동, 팍스타워)
법률상관리인 성낙민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3조, 제182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고, 아울러 동법 제232조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통지합니다.

다 음

- 가. 일시 : 2021. 4. 9.(금) 15:00
- 나. 장소 :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 다.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 : 별지 회생계획안 요지와 같다.

2021. 2. 3.

재판장

판사

서경환



수신처 :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중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끝.

열람용



제 2 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 2 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 1 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회사의 사업 계속을 통한 피투자기업의 보유지분가치 증대 및 적기매각에 따른 투자금회수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8월 4일 현재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자산 65,266백만원, 부채 777,496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12,231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59,149백만원으로 청산할 때의 가치인 48,087백만원 보다 11,062백만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채무자회사의 영업활동을 고려할 때, 채무자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권리변경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합니다.

회생 기간을 4년으로 하여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의 변제를 완료하며, 만일 예상수익금의 초과금이 변제할 회생채권을 조기에 전액 변제하고도 남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비율에 따라 추가 변제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익을 환원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 이하 전임직원들은 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경영 긴축 및 자산 매각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따뜻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2 절 시인한 총 채권액 내역

1. 시인한 총 채권액

채권조사기간(2020.10.13 ~ 2020.11.9)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0.09.15 ~ 2020.10.12) 이후 추후보완신고 등으로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변동액(+,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330,721,239	-	-	1,330,721,239	-	95,926,409	-	95,926,409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소 계	1,330,721,239	-	-	1,330,721,239	-	95,926,409	-	95,926,409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1,547,975,811	10,445,391,887	-	61,993,367,698	140,000,000	78,997,989	-	218,997,989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상거래채권	3,931,472,988	796,600,709	-	4,728,073,697	(84,500)	-	-	-84,500	3,931,388,488	796,600,709	-	4,727,989,197
	손해배상채권	555,705,582,146	148,565,511,365	-	704,271,093,511	82,289,355	(135,944,898)	-	-53,655,543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특수관계인채권	302,522,674	-	-	302,522,674	-	-	-	-	302,522,674	-	-	302,522,674
	미발생구상채권	2,704,800,000	-	-	2,704,800,000	-	-	-	-	2,704,800,000	-	-	2,704,800,000
	소 계	614,192,353,619	159,807,503,961	-	773,999,857,580	222,204,855	(56,946,909)	-	165,257,946	614,414,558,474	159,750,557,052	-	774,165,115,526
	조세등채권	1,223,553,700	2,443,440	46,425,150	1,272,422,290	23,531,230	70,917,780	-	94,449,010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계	615,415,907,319	159,809,947,401	46,425,150	775,272,279,870	245,736,085	13,970,871	-	259,706,956	615,661,643,404	159,823,918,272	46,425,150	775,531,986,826
합 계	616,746,628,558	159,809,947,401	46,425,150	776,603,001,109	245,736,085	109,897,280	-	355,633,365	616,992,364,643	159,919,844,681	46,425,150	776,958,634,474	

2. 주요 변동 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1)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이 추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금 95,926,409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2]과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신고철회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소멸된 회생담보권



회생계획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8건 금 3,657,710,329원이 신고 되었으며, 관리인이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그 중 금 648,004,766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별표3-3]과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7건에 금 153,527,271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4]과 같습니다.

(3) 신고철회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신고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금 338,770,114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5]과 같습니다.

(4) 소멸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25건에 금 297,503,977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6]과 같습니다.

(5)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67건에 금 1,636,628,097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7]과 같습니다.

(6) 정정된 회생채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조세등 채권의 변동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총 2건에 금 990,440,950원으로 상세내역은 [별표3-8]과 같습니다.



제 3 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변동 후 시인한 증 채권액				권리변경(출자권한)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합 계	원금/본세	개시전이자/가산금	개시후이자/증가산금	합 계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	-	-	-	1,330,721,239	95,926,409	58,979,177	1,485,626,825
	소 계	1,330,721,239	95,926,409	-	1,426,647,648	-	-	-	-	1,330,721,239	95,926,409	58,979,177	1,485,626,825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1,687,975,811	10,524,389,876	-	62,212,365,687	47,397,873,819	9,650,865,516	-	57,048,739,335	4,290,101,992	873,524,360	-	5,163,626,352
	상거래채권	3,931,388,488	796,600,709	-	4,727,989,197	3,605,083,243	730,482,850	-	4,335,566,094	326,305,245	66,117,859	-	392,423,103
	손해배상채권	555,787,871,501	148,429,566,467	-	704,217,437,968	509,657,478,166	136,109,912,450	-	645,767,390,617	46,130,393,335	12,319,654,017	-	58,450,047,351
	특수관계인채권	302,522,674	-	-	302,522,674	302,522,674	-	-	302,522,674	-	-	-	-
	미발생구상채권	2,704,800,000	-	-	2,704,80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소 계	614,414,558,474	159,750,557,052	-	774,165,115,526	560,962,957,903	146,491,260,817	-	707,454,218,719	50,746,800,571	13,259,296,235	-	64,006,096,807
	조세등채권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	-	-	-	1,247,084,930	73,361,220	46,425,150	1,366,871,300
	계	615,661,643,404	159,823,918,272	46,425,150	775,531,986,826	560,962,957,903	146,491,260,817	-	707,454,218,719	51,993,885,501	13,332,657,455	46,425,150	65,372,968,107
합 계	616,992,364,643	159,919,844,681	46,425,150	776,958,634,474	560,962,957,903	146,491,260,817	-	707,454,218,719	53,324,606,740	13,428,583,864	105,404,327	66,858,594,932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제1차년도(2021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2.9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일 전일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0년)에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제1차년도(2021년)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손해배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1년), 27%는 제2차연도(2022년), 63%는 제3차연도(2023년), 2%는 제4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2차 연도(2022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22년)부터 제3차 연도(2023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1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주식 2,000,000주(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100원)에 대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



회생계획안

존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 전환된 신주 등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 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3,000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수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